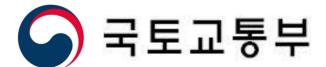
# 2024년 주거종합계획



# ||| 목 차 |||

Ⅰ. 추진경위1
Ⅱ. 2024년 주거지원 계획 ······· 2
Ⅲ. 추진방향5
Ⅳ. 중점 추진과제6
♡. 향후 추진계획32

## Ⅰ. 추진 경위

- □ 정부는 '22~'23년 수립된 중장기 주거정책에 따른 후속조치 등과 부동산 정상화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
  - **5년간**('23~'27) **270만호 공급계획**('22.8), **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** ('22.10) 등 **주거정책을 수립**하고 규제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
  - 취약계층 주거안전망 확보, 저출산 극복, 주택공급 활성화 등
   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거계획들도 발표
    - \*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('23.8),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('23.9) 등
  - 시장 과열기 도입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정상화하여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, 도심 공급 활성화 도모
    - \* 규제지역 해제, 안전진단 기준 개정('23.1),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('23.12) 등
- □ 금년에도 「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」와 연계하여 **다양한 주거** 지원 계획을 수립
  - 주택공급 규제 혁파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두 번째 민생토론회 (1.10)에서 「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」발표
  - 재개발 등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정비 +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을 위한 「뉴:빌리지」사업 도입(3.19, 21차 민생토론회)
  - 「든든전세주택」도입 등을 통해 **민간 위축을 공공이 보완**하고, 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「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」도 발표(3.28)
-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, 연도별 주거종합 계획 수립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과제 이행력 강화 추진

# Ⅱ. 2024년 주거지원 계획

◈ 공공주택 23.8만호(공공임대 11.5만, 공공지원 3.3만, 공공분양 9.0만), 주거 급여 145만 가구, 구입·전월세자금 29.1만 가구 등 총 197.9만호(가구) 지원

#### 1

#### 주거지워

- □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, 금융지원(구입·전월세자금) 등 **총 197.9만호(가구) 지원** 
  - (공공주택) 공공임대주택 11.5만호(사업승인), 공공지원임대주택 3.3만호 (부지확보), 공공분양 9.0만호(사업승인) 등 23.8만호 공급
  - (주거급여) 약 145만 가구 지원 및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를 인상하여 최저주거기준 시장임차료 대비 현실화
  -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%로 상향('23년 47%)하고, 기준 임대료를 '23년 대비 1.1~2.7만원 인상
  - (구입·전세자금 지원)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29만가구에 구입 자금, 전·월세 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강화

#### 연도별 주거지원 실적 및 계획

(단위: 만 가구)

	구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<b>'24년</b> (계획)
공공임	<b>대</b> (사업승인)	14	15.1	12.3	12.1	7.8	11.5
공공지	<b>원</b> (부지확보)	4.7	4.0	4.1	1.8	1.3	3.3
공공분	<b>양</b> (사업승인)	3.3	3.3	2.8	2.1	6.4	9.0
주거	급여 수급	104.0	118.9	127.3	133.0	141.5	145.0
기금	구입자금	5.5	4.8	7.0	5.8	10.2	15.7
대출	전월세자금	23.0	17.9	14.2	16.0	25.5	13.4
	총계	154.5	164	167.7	170.8	191.2	197.9

※ '24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 '25년까지 공급 추진 '24년 기금대출 지원 계획은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 2 주택공급

- □ '24년 전국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은 54만호
  - (지역별) 수도권 30만호(55.6%), 비수도권 24만호(44.4%) 목표
  - 세부적으로는 서울 11만호, 비수도권 광역·자치시 11만호 등
  - (유형별) 재개발·재건축, 도심복합사업, 소규모정비사업 등 12만호,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등 16만호
  - 도시개발, 기타 일반주택사업 등을 통해 26만호 공급 목표

#### 주택 인허가 물량 실적 및 목표

(단위 : 만호)

	10년평균				
구 분	('14~'23)	′23년 실적	상반기	하반기	'24년 목표
전국	56.6	42.9	20.3	22.6	54
수도권	28.1	20.4	8.0	12.4	30
- 서울	7.1	3.9	1.8	2.1	11
비수도권	28.5	22.5	12.3	10.2	24
- 광역·자치시	10.1	8.2	4.5	3.7	11
- 8개 道	18.4	14.3	7.8	6.5	12

# 3 택지공급

□ '24년 중 **공공택지**는 전국 20.6km '공급(실시계획 승인) 추진

#### '24년 개발방식별 공공택지 공급계획

(단위 : km²)

구 분	계	민간임대	공공주택	도시개발	지역개발
전 국	20.6	3.5	15.7	0.8	0.6
수도권	17.3	1.6	15.7	-	-
지 방	3.3	1.9	_	0.8	0.6

# 4 주거부문 예산

- □ 금년 주택자금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39.9조원 지원 계획
  - (재정) 주거급여, 재정비촉진, 공동주택분쟁조정센터 등 2.7조원
  - (기금) 임대·분양주택 건설, 구입·전세자금 등 37.2조원

#### <u>재정·주택도시기금 지원계획</u>

(단위: 억원)

구 분	′23년 실적	′24년 계획	증감
합 계	330,503	399,977	69,474
■ 정부재정	25,892	27,711	1,819
- 주거급여지원	25,591	27,424	1,833
-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	178	187	9
-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센터	20	20	-
-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	26	27	1
- 재정비촉진사업지원	77	53	△24
■ 주택도시기금	304,611	372,266	67,655
- 임대주택 건설·매입	136,426	179,543	43,117
- 분양주택 건설	5,821	20,262	14,441
- 주택구입·전세자금	113,124	123,645	10,521
- 주택개량자금 등 기타	49,240	48,816	△424

## Ⅲ. 추진방향

비 전

#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습니다

목 표

-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
- 국민 주거안정 기반 공고화 및 주거사다리 복원
-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



# 2024년 중점 추진과제

- 1.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상화 추진
- 2. 주택공급 활성화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
- 3.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거주비용 경감
- 4. 취약계층 등 주거안전망 강화 및 주거사다리 복원
- 5. 안전하고 품질높은 주거환경 구축
- 6.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및 산업 육성

### Ⅳ. 중점 추진과제

# 1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상화 추진

- ◈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,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도모
- □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 확대, 시장 정상화,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정상화 지속 추진 중

#### **주요 규제 정상화 조치**(기 완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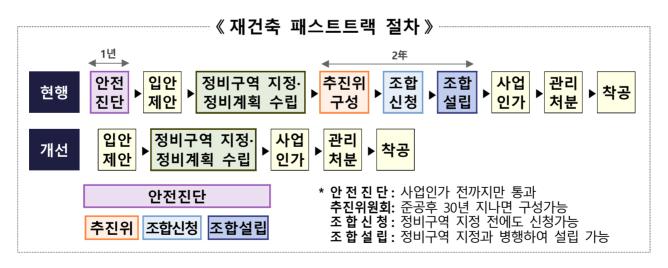
- ✓ (규제지역)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
- ✓ (전매제한) 지역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완화
   \* 수도권 최대 10년 → 최대 3년, 비수도권 최대 4년 → 1년으로 완화
- ✔ (중도금 대출)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(12억원) 폐지
- ✓ (특별공급 기준)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(투기과열지구 9억원) 폐지
- ✓ (청약 제도 합리화) 청약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,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
- 노후도 높은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및 명칭 변경 추진
- **재건축부담금**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제금액 상향, 부과구간 확대,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골자로 법률 개정 및 시행 완료(3월)
- □ 국민 주거이전 자유 확보 및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최대 3년 유예(3월)
  - \* (현행) "최초 입주" 시점부터 거주의무기간(최장 5년) 동안 "연속 거주" (개선) "최초 입주" 시점부터 "3년 이내 유예" 후 거주의무기간 동안 "연속 거주" 등
- □ 부동산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훼손하고,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'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' 등 공시제도 개편\* 추진
  - \* 조세·부담금 부담 및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공정성 확보 방안 등

# 2 주택공급 활성화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

- 1 선호도 높은 도심공급 활성화
- ◈ 정주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및 사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

#### 1 재건축·재개발

- □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, 조합 설립 시기 조기화로 사업기간 단축
  -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\*하고,
    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및 명칭변경(안전진단 → 재건축진단) 병행
    - \*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前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
  - 준공 30년 도과 시 추진위 구성\*을 허용하고,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이 병행 가능토록 개선
    - \* 추진위 역할을 "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"→"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"까지 확대



- □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요건 완화
  - \*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%로 완화, 노후도 외 편입가능 요건 개선 등

- □ 초기사업비 융자 등 **사업 초기 단계 자금지원** 등을 **신설**하고, **재건축 부담금 완화**\*
  - \*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, 부과구간 확대,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('24.3월 시행)

####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(안)



-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**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을 확대** (신탁보수 등 제반 실집행 비용,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) 등 추가 합리화 추진
- □ 표준계약서 배포 등으로 **공사비 갈등을 예방**하고, **전문가 파견**, **분쟁조정위 화해 효력 강화**\* 등 갈등 **조기 해소** 기반 마련
  - \* (現) 집행권원 효력만 인정(판결로 이의 가능) → (改) 판결효력까지도 인정(확정시 이의 불가)

#### ②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

- □ 現 정부 **임기 내 첫 착공**, '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, 용적률 상향, 금융지원, 이주단지 조성 등 **사업** 全 과정 지원
  - 특별법 시행(4월)을 위한 시행령 제정 등 준비작업 차질 없이 이행
  -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담은 기본방침, 재구조화 방향 및 단계별 정비계획 등을 담은 도시별 기본계획 발표
  - 선도지구는 5월 공모절차 착수, 하반기 지정하여 모범사례 제시
  - 국토부 내 (가칭)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, 지자체·주민 지원을 위해 LH, HUG, 부동산원, LX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

### ③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

□ 소형부지, 사업성 등으로 **일반 재개발·재건축이 불가능**한 지역은 **소규모정비** 및 **도심복합사업**으로 신속 추진

- 사업요건 완화\* 및 사업성 개선\*\*으로 **추진 가능지역**을 확대하고, **도심복합사업**은 사업 연속성을 위해 **일몰** 3년 연장('24.9월→'27.9월)
  - \*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(가로주택사업), 노후도 2/3 → 60%로 완화 등
  - \*\* 기금융자 한도확대(300→500억원), 기반시설 설치시 용적률·기금융자 인센티브 제공 등
- 절차 개선(조합설립 동의 80→75%), 참여유인 제고\*로 가속화
  - \* 도심복합 토지주 주택공급 기준일 : 現 제도도입일('21.6.29) →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

### 2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

◈ 노후 단독주택 주거지 등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를 갖춘 주거공간으로 재창조하고, 빈집 등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

#### □ 「뉴:빌리지」사업 도입

- □ 마을꾸미기 위주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하여 소규모 정비 등 추진 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
  - \* (사업유형) 정비연계형 :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 도시재생형 :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
  - 소규모 정비(자율주택정비) 및 **개별주택 재건축** 추진 시 **기금융자** 지원 확대, 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
- □ **연내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**을 **마련**하고 각종 제도 정비 완료, 사업지 대상을 **선제적**으로 **발굴**하여 9월부터 **시범사업 본격 착수** 
  -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편의시설 지원 등에 향후 10년간 10조원 집중 투자

#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(예시) 지역특화재생 지역특화재생 (명 15곳, 개소당 150억) (現 15곳, 개소당 150억) (명 15곳, 개소당 150억) (명 15곳, 개소당 150억) (명 15곳, 개소당 150억)

○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 등을 통하여 「뉴:빌리지」사업 관련 컨설팅 등 통합지원

#### ② 빈집 등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

- □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확대를 위해 **기금 융자기간 확대**(5→7년) 및 **중도상환 허용** 
  - **빈집**(사업구역 내 20% 이상) **포함** 및 **사업구역 외 부지**를 활용하여 기반시설 공급 시, 용적률 상향과 기금융자 지원
    - \* (용적률 상향) 법적상한 1.2배, (기금지원 확대) 총사업비의 70%까지 1.9% 저리융자
- □ 주거재생혁신지구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**우선공급 기준일 합리화**\*
  - \* 개별 후보지 발표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모두 현물보상 허용(法)
- □ **빈집 정비 활성화**를 위해 전문기관의 지자체 **컨설팅을 제공**하고, **빈집밀집구역**은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**가점 부여**

# 3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

◈ 1~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공급규제 개선,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 기반 구축

### □ 소형주택 공급규제 개선

- □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및 **방설치 제한 규제**\*를 폐지하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 완화\*\*
  - \* (세대수 규제) 300세대 미만, (방설치 제한) 전체 세대수 절반까지만 가능
  - \*\*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 당 일반 주차면수 3.5대 적용
- □ 중심상업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**단일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**,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**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** 
  - \* (세대수 규제) 300세대 미만, (방설치 제한) 전체 세대수 절반까지만 가능

# □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(60m² 이하, 아파트는 제외)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% 감면<sup>법률 개정 전제</sup> □ 도시형 생활주택 등 **융자 한도 상향**\*(1년 한시) 및 **저리 지원** \* (**분양**) 7.500만원 → 1억원. (**임대**) 장기일반 1.0 → 1.2억원 / 공공지원 1.2 → 1.4억원 ㅇ 공사비 지원단가 현실화, 非아파트 융자심사기준 신설로 공급 촉진 ③ 등록임대 사업여건 개선 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**단기 등록임대**를 **도입**하고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, 세제 혜택 등을 합리적 적용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□ 대규모 민간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가 보다 원활하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\* \* 대출 가능기관 확대, 기금 투자 임대리츠는 심사기준 개선 및 절차 간소화 □ 임대보증 가입 시 적절한 시세 반영을 위해 주택가격 산정방식 개선 ④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□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차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규제완화, 금융·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o 적정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5% 상한 외 **임대료 증액**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을 허용 ㅇ 20년 이상 장기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 융자 및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추진

②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·금융 지원

# 4 주택건설 사업 여건 개선

◆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·정상화·리스크 해소 등 지원

#### Ⅱ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

- □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30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
  -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보증을 발급하고 신청기한도 완화
- □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\*로 건설업계 자금애로 완화
  \* 책임준공보증(3→6조원), 비주택 PF 보증(3→4조원), 건설사 특별융자(0.3→0.4조원) 등
- □ 도시형생활주택·오피스텔 **PF 대출 보증한도**도 **확대**(70→80%)하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 강화
- □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「분양가 5% 할인」을 폐지하여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

### ②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및 리스크 해소

- □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과 함께, 리스크 해소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세제 혜택 부여
  -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(취득가 3억원 이하 등)을 **임대주택 활용시** 주택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 최대 50% 감면<sup>법률 개정 전제</sup>
  - 구입자(최초구입, 85㎡·6억원 이하)는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하고, 기존 1주택자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
  - **기업구조조정 리츠**는 취득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지원

	인구감소지역은 기존 1주택자가 주택 1채(공시가격 4억원 이하)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
	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의 양도 가능 주식 수를 확대(50→100%)하고 양도 가능시기 조기화(입주 4년후→즉시)
+-+	재개발·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 주택 인수가격을 상향*하여 공사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 * (現) 표준건축비 → (改) 기본형건축비의 80% 수준으로 약 1.4배 상승
	건설투자 활성화,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<b>'24년 신규사업을 대상</b> 으로 <b>수도권 50%, 비수도권 100%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추진</b> <sup>법률 개정 전제</sup>
3	사업장 등 정상화 지원
	민관합동PF 조정委(공공참여), 건설분쟁조정委(순수민간)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사비 분쟁 등 애로 요인 적극 해소
Ò	민관합동PF 조정委는 조정 <b>수요 증가</b> 를 고려하여 상설로 운영하고, 법정 위원회 격상을 통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제고
	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하여 지원*
	* 매입시 LH 취득세 25% 감면(법률 개정 전제)
	브릿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* 기존 투자자는 리츠 주주로 전환, 기금은 신규 출자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 건설·운영
	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, PF 정상화 펀드(2.2조원)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 지원(캠코)

#### 5 공공의 주택공급 확대

◈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(12.5만호)을 상회하는 14만호 이상 공급하고, 택지물량 확대, 조성속도 제고로 부담 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

#### ① 공공주택 공급 확대

- □ '24년 LH 공급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, 지방공사 참여 확대 및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공공주택 적기 공급
- □ 공공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
  -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,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\*하고, 시행기간도 '24.12월까지 연장
    - \* (現) 미매각토지 + (추가) 기매각토지 중 공공주택 수요부지 + 신규 공급 토지 일부
- □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확대('27년 최대 30%), 민간 단독시행 근거 마련으로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
  -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는 '23년 대비 약 15% 상향 조정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

#### ② 신도시 등 공공택지 속도 제고

- □ '18~'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중 5개 지구\* 연내 주택착공 추진
  - \* ('24.上) 인천계양, ('24.下) 고양창릉, 남양주왕숙, 하남교산, 부천대장
  - 광명시흥 지구 등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'신도시리츠' 도입 및 사업지역 지방공사 참여 확대 추진
- □ GB 해제가능물량, 유휴부지 등 활용하여 신규택지 2만호 발굴 추진
  - **수도권 신도시**도 **토지 이용효율화**(용적률 상향, 공원녹지 및 자족용지 조정 등)로 '24년부터 3만호 이상 물량 확충

# 3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거주비용 경감

# 1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

◈ 무주택 서민 주거사다리 강화와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뉴:홈 공공분양(7.6→9만호) 및 공공임대주택(10.7→11.5만호) 확대 공급 추진

#### Ⅱ 뉴:홈 공공분양 9만호 공급

- □ 뉴:홈 5년간 공급목표('23~'27) 총 50만호 중 **'24년은 우수입지**에서 **'23년 대비 1.4만호 증가한 9만호**(인허가) **공급 추진** 
  - (유형별) 나눔형 4.6만호, 선택형 1.8만호, 일반형 2.6만호 공급
    - \* 예산안 기준으로 향후 세부 유형별 공급계획의 경우 시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구분	나 <b>눔</b> 형 선택형		일반형
물량	4.6만호	1.8만호	2.6만호
특징	■ 시세 70% 이하 분양 ■ 시세차익 70% 보장 ■ 최저 1.9% 저리대출	■ 6년간 임대거주후, 분양여부 선택 ■ 최저 1.9% 저리대출	■ 시세 80% 수준 분양 ■ 최저 2%대 저리대출

- (지역별) 수도권 6.4만호, 비수도권 2.6만호 공급('23~'27년 공급계획 기준)
- (대상별) 미혼 청년·신혼부부·출산 가구 등 청년층 대상 6.1만호 공급

#### 뉴:홈 유형별 공급비율

나눔형	
청년 15%	
신혼부부 15%	
신생아 35%	
생애최초 15%	
일반공급 20%	

선택형
청년 15%
신혼부부 10%
신생아 30%
생애최초 <b>10</b> %
다자녀 10%
기관추천 10%
노부모 5%
일반공급 10%

일반형
신혼부부 10%
신생아 20%
생애최초 <b>1</b> 5%
다자녀 10%
기관추천 10%
노부모 5%
일반공급 30%

#### ② 공공임대주택 11.5만호 공급

- □ 고금리,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'23년 대비 0.8만호 증가한 11.5만호\* 공급
  - \* 건설임대 3.5만호, 매입임대 4.0만호, 전세임대 4.0만호
  - 수도권에 8.2만호(७४%)를 집중 공급하고, 청년층 5.1만호·고령자 1.2만호 등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적정물량을 공급
  - 필요 시 도심 내 즉시 공급 가능한 전세임대 등 탄력적 공급
- □ 기존 공급체계\*와 별개로, 양육·귀농 등 지역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는 「지역제안형 특화임대」도입\*\*
  - \* 청년 특화임대주택, 실버 공공임대,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
  - \*\*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('24.6), 특화임대 통합지침 마련('24.8)
  - 고령자·장애인 등 특성에 맞는 공간·서비스를 민간이 설계·제공하는 **특화 매입임대 공모**(6월) 및 **운영·평가기준 마련**\*(12월)
    - \*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단계별(선정-운영-재계약) 평가지표 개발 등

#### 특화 매입임대 예시

**○ 청년 + 예술**(서울 서초, 아트집)

**② 청년 + 창업** (서울 서대문 이글네스트)

❸ 고령자 + 복지 (서울 도봉, 해심당) **4 장아인 + 자립자원** (서울 은평. 다다름하우스)







- □ 입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**방치 공간의 생활SOC 전환** 등 **노후 국민임대 시설개선** 신규 추진(2.1만호)
  - 기존 공공임대의 노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·리모델링· 재정비 등 공공임대 생애주기 관리전략을 마련
- □ 청년·신혼부부·서민·저소득층 등의 **전·월세 수요 조기 흡수**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**입주자 모집 물량을 전년 대비 1만호 확대**\*
  - \* ('23년) 7.9만호(건설 1.3, 매입 2.7, 전세 3.9)→ ('24년) 8.9만호(건설 2.2, 매입 2.7, 전세 4.0)

#### 2 중산층 · 서민층의 거주부담 경감

◈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·서민층에게 공급 (전세 2.5만호, 월세 7.5만호)

#### Ⅱ 든든전세주택 신규 공급

<u>′24~′25년「든든전세주택」공급계획</u>					
든든전세주택 '24년 '25년 합계					
계	8.5천호	16.5천호	25천호		
LH 든든전세주택	5천호	10천호	15천호		
HUG 든든전세주택	3.5천호	6.5천호	10천호		
* 향후「든든전세주택」수요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 지속 보완·발전 추진					

- □ (LH) 신축 非아파트(60m²~85m²)를 매입한 후, 무주택 중산층 가구 (다자녀 등, 소득·자산 무관)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전세로 공급\*
  - \* (보증금)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% 수준, (거주기간) 최대 8년(4+4년)
  -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·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하여 우선 공급하고 잔여분은 무주택자 대상 추첨제로 공급
- □ (HUG)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
  - \* (보증금)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% 수준, (거주기간) 최대 8년(4+4년) (방식) 무주택자 추첨

### ② 신축매입임대 주택공급 확대

- □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신축매입약정의 매입단가를 **현실화**하고 물량도 확대('23년 0.8만호 → '24년 3.5만호 → '25년 4만호)
  - o 적정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**평가방식을 보완**하고 **매입 상한** 단가 및 매입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
  - 신축매입약정 주택에 대한 PF보증 도입, 용적률 인센티브\* 확대
    - \* (現) 지자체별 조례 한도의 1.2배까지 완화 가능 → (改) 법적한도의 1.2배까지 완화 가능

##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

#### ① 청년층을 위한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

3

- □ 청약통장 대출 최초 연계 청약 등 청년 내집마련 기회 확대
  -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「주택드림 청약통장\*」도입, 가입요건, 높은 이자율 등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
    - \* (가입요건) 소득 연 3,600→5천만원 이하, (이자율) 최대 4.3→4.5%, (납입한도) 월 50→100만원
    - \*\*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
  -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가 80%까지 저리· 장기 융자\* 및 생애주기별 우대금리\*\* 추가 지원(12월)
    - \* 금리 최저 2.2%(소득만기별 차등),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\*\* 결혼시 0.1%p, 최초 출산시 0.5%p, 추가 출산시 1명당 0.2%p (단, 대출 금리하한선은 1.5%)
- □ **청년층의 내집마련 이전**에도 **안정적**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**지원** 
  -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 **청년월세 지원사업**의 보증금· 월세금액 등 **거주요건을 폐지**하고 **지원기간도 2년**\*으로 **확대** 
    - \* 신규 신청자는 신청한 달로부터 24회, 1·2차 중복 신청자는 2차 지원 기간 내 12회 지원

####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 개편(안)

기준	<b>현행</b> (2차 사업)	개선
거주요건	보증금 5천만원·월세 70만원 이하	폐지
소득요건	청년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(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<sup>*</sup> )	좌동
지원규모	월 최대 20만원, 12회	월 최대 20만원, <b>24회</b>
사업기간	신청 '24.2~'25.2월, 지원 '24.3~'26.12월	신청 좌동 지원 ~'27.12월로 연장

- \*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(혼인, 중위소득 50% 이상 등) 외에는 원가구 소득도 고려
- 청년 대상 월세대출(금리 최저 1.3%) 지원 대상·한도 확대\*(1월), 계약 종료 후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도 완화(최대 8년 내 분납)
  - \* (주거안정 월세대출) 대출한도 월 40→60만원 / (청년 보증부월세 대출) 보증금 5천 →6.5천만원 이하, 보증금 대출한도 3.5천→4.5천만원, 월세 대출한도 50만원

-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원금 분할상환 유예(1월) 및 지원대상・한도 확대\*(3월)
- □ 청년 니즈를 고려한 특화 설계·서비스\*가 결합된 청년 특화임대를 역세권 등에 본격 공급하여 주거공간 확충(6월, 1천호 공모)
  - \* (예시) 복층·공유형 등 다양한 공간 기획, 다목적공간·스터디룸 등 코리빙 공간 조성, 조식 제공 등
  -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HUG 융자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청년 공유주거 공급 활성화 기반 조성(3월)

#### 2 신혼·출산가구 내 집 마련 지원

- 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, 결혼·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청약·대출 등에서 받게되는 '결혼 페널티'를 '결혼 메리트'로 전환
- □ 미혼일 때보다 결혼·출산 시 내 집 마련에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약요건 제거, 소득요건 완화 등 대폭 개선
  - (자격요건)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·청약당첨 이력 등 신혼 부부·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약요건 적용 배제(3월)
  - (소득요건) 미혼보다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점제 도입(3월)
  - (청약당첨) 부부가 청약 중복당첨(동일일자) 시 先 신청분을 인정하고,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적용(3월, 공공·민간)
- □ '23.1.1일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,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 저리의 구입·전세자금 특례대출 지원\* 개시(1월)
  - \*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시중은행 대비 1~3%p 낮은 금리 적용(구입 1.6~3.3%, 전세 1.1~3.0%)

- 대출시, 미혼 대비 **출산가구**에 대한 소득, 금리 등 '메리트\*' 제공
  - \* 소득요건(일반대출<sup>미혼</sup>↔특례대출): (구입자금) 0.6↔**2억원** / (전세자금) 0.5↔**2억원**
- □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규 출산가구에게 최대 연 7만호\* 특별·우선공급(3월, 공급근거 마련)
  - \* (유형별 물량) 공공분양 3만호, 민간분양 1만호, 공공임대 3만호
- □ 신혼 등 육아 수요가 많은 **신도시** 중심으로 '아이돌봄 클러스터\*'를 조성해 원스톱 돌봄·교육서비스 제공 추진
  - \* 보육·문화·생활SOC 등을 통합 설치,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·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(現 의정부 고산지구 시범사업 중 → 타 공공택지까지 적용 확대)

#### ③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고령자 특화 주거공간 확충

- □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서민·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
  - (공공) 고령자 복지주택\*을 연 1천호→3천호로 확대하고, 소득 자격요건을 완화한 추첨제 도입\*\*(6월,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)
    - \*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특화임대주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 \*\* (現) 순차제 100% → (改) 순차제 60% + 소득기준 완화 추첨제 40%
  - 복지부와 협업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\*·응급안전안심서비스\*\* 설치 등 고령자 가구가 필요로 하는 건강·안전서비스 연계
  - \* 읍·면·동 단위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전담기관(기존 보건지소 대체, 전국 97개소)
    \*\* 활동감지기 등을 통해 움직임·심박 등 이상징후를 감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
  - (민간) 안정적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고령자 특화 시설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민간임대 리츠 중심의 '실버스테이' 도입
  -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입주자격(유주택 고령자 포함), 시설기준(무장애설계) 등을 개선해 서비스 운영 중심 임대주택으로 공급
  - 민간부지 등을 활용한 **도심공급** 등 다양한 방식의 **시범사업** 추진

# 4 취약계층 등 주거안전망 강화 및 주거사다리 복원

# 1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

- ◈ 주거급여 확대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, 주거상향 및 긴급주거 지원 강화,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
- □ (주거급여) 지원대상을 '24년 기준중위소득 48%까지 확대하여 145만 가구를 지원하고, '27년 50% 목표로 단계적 확대 추진
  - 수급가구 중 **임차가구**는 임대료 **지원액**을 **상향**(평균 17.9 → 19.1만원), 자가가구의 주택수선비용도 적정 수준으로 **인상**(9월)
- □ (주거상향) 쪽방·고시원 거주가구 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
  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이주지원\* 확대('23 1만호 → '24 1.3만호)
  - \*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최대 8천만원(5천만원 무이자, 초과분 1%대) 보증금 대출 지원
  -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옥탑가구 등\*도 지원 포함
    - \* 옥탑가구, 미혼모 보호시설 등 주요시설 퇴소자,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 등
  - **쪽방촌**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**쪽방촌 정비**도 본격화
    - \* 서울역 지구지정 추진, 영등포역 쪽방주민 임시이주(11월), 대전역 보상착수(11월)
- □ (긴급지원)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순환형 긴급지원주택을 지자체에 공급하여 위기발생 즉시 임시거처로 활용\*(총 500호)
  - \* (LH) 공공임대 공가 제공 / (지자체) 지역 여건에 맞게 입주자 선발
  -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·연계 서비스 지원
- □ (전달체계) 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없도록 온·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강화하고, 현장형 수요자 밀착 서비스도 지원

- 마이홈앱\* 챗봇 도입(3월)으로 시간·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 주거복지 상담 제공, 지역별 광역 주거복지센터\*\* 확대 설치 지원
  - \* 국가·지자체가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책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주거복지종합포털
  - \*\* '23.末 기준 전국 59개소 설치 / 대전, 울산, 전남, 경북, 경남 등 5개 시·도 미설치
- 영구임대 입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\*를
   지자체(지방공사) 영구임대까지 배치 확대('23 111개소 → '24 130개소)
  - \* (주업무) 입주민 주거복지 실태조사·분석·상담, 돌봄 서비스 등 입주자 문제해결 지원 등

# 2 非아파트 구입부담 완화 및 수요 정상화

□ **향후 2년간** 준공된 **소형 신축 주택**(60㎡ 이하, 수도권 6억·지방 3억 이하, 아파트는 제외)은 취득세·양도세·종부세 산정시 **주택수 제외** 

#### 주택수 제외 대상 및 효과

대상 주택	■ `24.1월~`25.12월 준공된 전용 60m² 이하, 수도권 6억원·지방3억원 <sup>*</sup> 이하 다가구 주택,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, 도시형생활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을 `25.12월까지 최초 구입시 * (취득세) 취득가격 (양도세·종부세) 공시가격
주택수	■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, 기존 보유
제외	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(단, 취득세는 3년('24.1~'26.12) 동안 제외하고, 추후 연장 검토)
효과	* 다만, 1세대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, 1세대1주택 특례(양도세·종부세) 미적용

- 소형 기축주택\*은 향후 2년간 구입·임대등록(매입임대) 하는 경우,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
  - \* `24.1월~`25.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m² 이하, 수도권 6억원·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아파트 제외), 도시형생활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
- □ 주택청약에서 非**아파트 소형**(60㎡ 이하)·**저가주택을 무주택**으로 **간주**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**수도권 3억원**(지방 2억원)으로 **상향**

#### 청약 시 非아파트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기준

<b>기준</b> (공시가격)	현행	개선
수도권	1.6억원 이하	3억원 이하
지방	1.0억원 이하	2억원 이하

# 3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

◈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,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과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강화

#### ①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

- □ LH가 現경공매 낙찰매입(낙찰가)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**협의매수** (감정가)하여 **보증금 반환**을 **조기화**하고, **반환금액**도 확대
  - ㅇ 임차인 外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
    - \* 감정가(시세) < 보증금일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
  -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한 후 매입
    - \* 협의매수 및 채권조정을 위한 절차·기준(채권조정위)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
- □ 복잡한 권리관계로 **협의매수 곤란** 시 **우선매수권**을 활용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**경·공매 대행** 및 **저리금융** 등 지원

#### ② 피해 임차인 주거지원 강화

- □ 주거 불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<sup>1</sup> 기존 주택 매입임대 → <sup>2</sup> 전세
   임대 → <sup>3</sup> 대체 공공임대의 3단계 지원체계 구축(1월)
  - 기존 주택 매입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**다가구 주택도** 매입할 수 있도록 **매입임대 요건 완화**\*
    - \* (現) 다가구주택 내 임차인 전원 동의 → (改) 다가구주택 내 피해자 전원 동의 기존 매입제외 요건(불법건축물, 최저주거기준 미달, 반지하 주택, 근생 등) 준용
  - 매입 곤란 시 피해자가 동일 주택에 지속 거주토록 낙찰받은 新소유자-LH 간 전세계약을 새롭게 체결, 피해자에게 재임대

- □ **주거용 오피스텔**도 **구입 대출**\*을 지원하고, 경매 개시에 따른 **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화** 조기화\*\*
  - \*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에 신규 포함 /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은 기 포함 \*\* 현재는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저리대환 대출지원

#### ③ 피해 임차인 종합지원 체계 강화

- □ 낯설고 복잡한 **법적 절차**를 피해자가 **법률전문가**의 **도움**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**지원 확대**(2월)
  - 경·공매 개시부터 낙찰까지 법률전문가가 모든 절차를 대행하고,
     관련 비용은 지원 확대(現 70% → 改 100%, 2월)
  - **피해자 결정 이전**에 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실시한 때도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 소급 **지원**(2월)
  - 임대인의 회생·파산에 따른 경매에도 유예·대행 지원\*(특별법 개정)
    - \* 현재는 담보물권자에 의한 임의경매, 임차인등에 의한 강제경매 시에만 인정 중
- □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개발(4월)

###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주요기능

- (피해 접수)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접수 신청, 진행상황 확인
- (결과 확인) 피해자 결정 즉시 온라인으로 결정문 발급, 재발급도 가능
- (지원방안 연계) 지자체·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결정 사실 통보, 진위 확인
- □ 분산된 피해지원 접수창구\*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피해자 편의 제고(2월)
  - \* 공공임대: LH / 조세채권 안분: 세무서·지방자치단체 / 경·공매 유예: 법원 등
  - 서울·인천·경기·부산·대전 등 주요 지역 **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** 상담 특화지점을 지정하여 원활한 금융지원 제공(2월)

□ 최초 상담 정보부터 피해자 신청 현황, 희망 지원책 등 피해자별 상담 이력을 관리하여 맞춤 상담 지원(2월)
4 전세사기 예방 강화
□ (중개사 책임 강화)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<b>손해배상책임 실효성</b> 강화를 위해 공제한도 확대 <sup>*</sup> 및 소송 없이 지급절차 간소화 <sup>**</sup>
* 연간 공제한도(現 개인 2억원/법인 4억원)를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·차등화 **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하여 지급기한 단축(2~4년→3개월)
○ <b>임대인 체납</b> ,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<b>확정일자 부여 현황*</b> , <b>임차인 보호제도</b>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**·설명 의무 부여(4월)
* 다가구주택은 1개 등기에 다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, 선순위 보증금 확인 필요 ** 확정일자 부여현황, 국세·지방세 체납정보, 전입세대 확인서, 최우선변제금 등
<ul> <li>□ (위험계약 방지) 임대관리업체 관리·감독 강화*, 허위계약 검증**</li> <li>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 방지</li> <li>* 자본금 요건 강화(1.5→2억원),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</li> </ul>
**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과 렌트홈을 연계하여 임대차 계약정보 사실검증
○ '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' 사업*의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* 확정일자 신고된 보증금(RTMS에서 확인)은 우선 차감 후 대출 실행
<ul><li>□ (안심전세앱 고도화)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사례 및 악성임대인 공개, 주택유형·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</li></ul>
□ (전세보증) 가입부담 완화를 위해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환급받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·소득기준, 보증범위 대폭 확대(3월)
* 환급금액 : 최대 30만원

연령 : (現) 만 39세 미만 등 청년 → (改) 전 연령 소득 : (現) 청년 5천만원 → (改) 청년 5천 청년 외 63

소득 : (現) 청년 5천만원 → (改) 청년 5천, 청년 외 6천, 신혼 7.5천만원 범위 : (現) 신청 년도 신규가입 보증 → (改) 신청일 기준 유효 보증

# 5 안전하고 품질높은 주거환경 구축

# 1 공공주택 안전·품질 확보

- ◈ 철근누락 재발방지 등 공공주택 안전강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LH 등 권한을 조정하고 사업관리 강화 추진
- □ 업체선정 권한을 LH에서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\*하고, 진입장벽이 없는 공정한 심사기준도 마련(LH법 개정)
  - \* 공공주택 설계·시공업체 → 조달청 / 감리업체 → 국토안전관리원(LH법 개정 이후)
  - 취업심사 강화로 재취업단계부터 전관유입을 통제하여, 전관업체 입찰제한 등으로 이권카르텔 차단(LH법·공직자윤리법 개정)
- □ **공공주택 공급부문의 LH-민간 경쟁**체계를 도입하여, 우수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(공공주택특별법 개정)
- □ 감리업체 선정·감독권을 국토안전원으로 이관해 **독립적 감리수행**을 **보장**하고, 설계·시공 시 제3자의 검증·확인\* 등 **사업관리 강화**\*\*
  - \* (설계) 외부전문가가 모든 LH 공공주택 단지의 설계를 검토 (시공) 철근누락 등 점검결과를 국토안전원이 확인한 이후에 후속공정 시행
  - \*\* 중대하자는 30일 내에 우선처리(현재는 중대하자 미선별 + 평균 420일 소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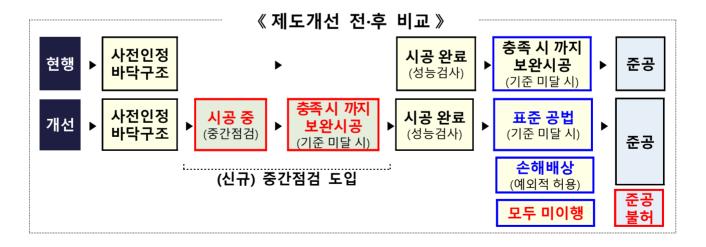
# 2 층간소음 저감

- ◈ 층간소음 없는 주택 공급을 위한 시공사의 책임 대폭 강화 및 기술 개발 유도, 기축 주택의 소음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
- □ 「층간소음 해소방안」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, 준공 후 소음 기준 미달시, **보완시공 의무화**, **손해배상** 등 **시공사 책임 강화**

#### 「층간소음 해소방안」('23.12) 주요 내용

신축	•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 보완시공 의무화 및 예외적 경우만 손해배상 갈음 허용 • 손해배상 시 성능검사 결과 대국민 공개 • 검사대상 수 2 → 5%로 확대 • 시공 중간단계 검사 및 기준 미달 시 보완 후 진행
기축	• (바닥방음 보강) 저소득층 대상 재정보조, 그 외에 융자지원 검토 • (방음매트 시공) '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 전환 검토
공공	• (1등급 주택) '25년부터 1등급 수준 설계, 바닥 슬래브 두께 상향(210→250mm) • (기술개발 등) 전담 기술혁신 시험시설 건립 및 1등급 기술 시범단지 적용

- 전세대 공사 완료 후 무작위 샘플(2→5%)로 측정하고, 시공 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'보완시공 가이드라인' 마련 추진
- **마감재 시공** 前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중간점검 실시 후 모든 세대로 확대하고, **기준 미달** 시 공법 변경 등 **보완조치** 의무화
- 임차인, 장래매수인 등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시 성능결과 공개
   대상을 입주예정자\* → 전국민\*\*으로 확대
  - \* 입주예정자에게는 우편 등을 통해 성능검사 결과 의무통보('24.7월 시행예정)
  - \*\* 성능검사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



- □ 기축 공동주택 충간소음 해소를 위해 성능보강 융자사업(매트시공, 바닥 방음공사) 지원 기준 합리화\* 및 이율 인하 등 실질 지원 강화
  - \* (예시) 융자대상 '리모델링 조합' 외 '개안까지 확대 지원대상을 1.2등급  $\rightarrow$  1.2.3등급 바닥구조로 확대

#### 바닥구조 방음공사 기준 합리화

기준	현행	개선
요건	바닥충격음 차단구조 1·2등급	바닥충격음 차단구조 1·2·3등급
이율	연 4.0%	연 2.0%
기간	3년	5년
상환방식	만기일시상환	원리금균등분할상환

<sup>\*</sup> 재정당국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- □ '24.10월부터 의무화되는 **충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**(500세대↑) 지원을 위해 **위원회 구성·운영**, 단계별 **분쟁대응 방법** 등 **컨설팅**\* 제공
  - \*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기구(LH 위탁)를 통해 컨설팅 추진

####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진행 절차

민원 접수	충간소음 관리위원회 회의소집	통지서 송부 답변서 회수	현장방문 및 의견청취	충간소음 관리위원회 회의 진행	중재안 제시	중재안 시행 이후 조치사항 확인	(미해결시) 외부기관 안내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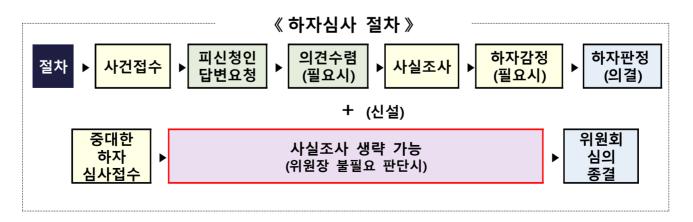
- □ 건설사의 **충간소음 저감 노력**을 유도하기 위해 **인센티브 부여** 및 **공공주도 기술 선도적용 등**을 통한 **민간 확산 유도** 
  - 바닥 **슬래브 두께 상향**(250mm 이상) 시 **높이 제한**을 **완화**\*하고 **1·2등급 바닥구조** 사용시 건축비 가산(분양가격 산정규칙 등)
    - \* '24.7월 시행을 위해 「주택건설기준규정」(대통령령) 개정 추진
  - LH의 충간소음 시험시설 건립으로 자체기술 검증과 민간 확산을 지원하고, '25년도부터 공공주택에 1등급 설계적용 기반 마련

#### LH 층간소음 혁신기술 시험시설

구분	벽식구조 실험동 (A동)	라멘구조 실험동 (B동)
실험동	180mm 4F 150mm 3F 210mm 2F 210mm 1F	2F 1F 59m 84m
바닥두께	210 mm , 150 mm	150 mm
평형	59m², 84m²	59m², 84m²

# 3 하자 발생·피해 최소화

- 하자심사위원회 등을 통한 全 주기(하자신청-심사-보수) 하자관리 강화를통해 조속한 하자 보수체계 확립
- □ 심사 과정에서 **중대하자는 선별**\*하여, **우선 처리**\*\*(Fast-Track)
  - \* 구조체 균열 등 심각한 안전 우려 또는 승강기 고장 등 일상생활 불편 \*\* 현재 미선별 + 평균 420일 소요 → 중대하자 결정시 법정처리 기간 단축(60→30일)
  - 하심위 전문인력을 충원하고, 다수·반복되는 하자 유형은 처리 표준안을 마련(하반기)하여 처리기간 단축
- □ 하자 판정시 보수계획서 및 보수조치 결과를 건설사가 지자체에 제출(필요시시정조치)토록 하여 하자 관리 강화(공관법시행령개정, 하반기)
  - 판정신청부터 심사·보수 등 전단계에 걸쳐 일관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및 지자체 공유체계 마련



# 6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및 산업 육성

# 1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구축

- □ (매물) 허위매물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위반사례가 확인되고 있어,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예방\* 활동 실시
  - \*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플랫폼을 통해 거래완료 매물 삭제 및 경고 메시지 발송, 적발건수 다수 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, 공인중개사 대상 허위매물 근절 가이드라인 배포
  - 원룸, 빌라 등 **소규모 주택 관리비**의 월세 전가 방지 및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매물 광고 시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
- □ (계약) 지능화되는 부동산 작전세력에 대응해 촘촘한 감시망과 맞춤형 선제적 조사기법으로 조사 적시성 및 사고예방 강화
- 국토부와 신고관청(시·군·구청)뿐만 아니라 **시·도**에도 **부동산 이상 거래에** 대한 **조사권한**을 **부여**(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)
- 안전하고 편리한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개업 종사자 교육 제도를 개편하여 전문성 및 윤리의식 제고(중개사법 개정)

#### 교육제도 개편방향

대상	현 행	개 선
개업 전 중개사	중개 법령 위주(28~32h)	실습 위주 교육 과목·시간 강화(64h)
장기 미종사자	-	중개실무 보수교육 신설(120h)
중개 보조원	고용신고 전 직무교육(3~4h)	직무교육 강화(8h), 2년 주기 재교육 신설

□ (등기) 아파트에 시범운영 중인 실거래 등기정보 공개를 연립· 다세대(상반기), 오피스텔(하반기) 등으로 확대해 허위 거래신고 방지

#### 2 부동산 시장 투명성·공정성 강화

□ (주택통계 개선)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통계기관의 독립성 및 통계의 객관성 제고 등 주택통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

- 통계·주택학회 및 **전문기관 연구\***, **공론화** 과정을 거쳐 **개선** 추진 \* 국토연구원, 주택학회, 통계학회와 연구용역 진행중('23.12~'24.9)
- **주택공급 통계**도 외부 민간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**정합성 제고**
- □ (공시가격) 공시가격 정확성·투명성 제고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, 조사자 실명제 및 시·도의 검증센터 시범사업 등 추진
- □ (토지보상) 토지보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토지보상 통합 관리 시스템\*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(토지보상법 개정)
  - \* 건설사업정보화(CALS)의 하부시스템으로, '제6차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' 과제로 선정되어 '25~'27년 시스템 구축 추진 예정
- □ (관리비 투명화) 보다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비 정보를 손쉽게 확인ㆍ비교할 수 있도록 K-apt\* 적용대상ㆍ기능 등 강화
  - \* K-apt: 공동주택 정보공개(관리비·회계감사 결과 등)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
  - **K-apt 의무 공개대상**을 확대하고(150→100세대 이상), 관리비 부실· 부풀리기 등을 **자체 검증**하여 **사전**에 알려주는 기능\* 고도화
    - \* (예시) 공용관리비 또는 개별사용료가 전년 동월 대비 10% 상승 → 지자체 검증 착수
  - 관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부동산 전문 기관(LH, 부동산원 등)이 내역 점검을 통해 적정성을 확인토록 개선

# 3 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

#### □ 리츠 활성화

- □ 특정 분야 또는 국내 부동산 시장 불안에도 리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니어주택, 산업단지 등 리츠 자산 다양화
  - (**헬스케어**)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민간참여를 통해 **시니어주택**과 의료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**헬스케어 리츠 도입**\*
    - \* 선도사업으로 화성동탄2 의료복지부지를 활용한 헬스케어 리츠 사업자 선정(4.19)

○ (산업단지) 기업은 신산업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은 기업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산업단지 리츠\* 활성화 추진 \* 기업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하고 재임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 □ **우량 부동산**의 리츠 시장 **편입**을 위해 리츠 및 AMC가 원활히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및 운영 부담 완화 □ 국민의 리츠 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리츠 투자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리츠 데이터에 대한 민간 활용 제고 ② 부동산 신산업 기반 구축 □ (기반조성) 중개법인 육성을 위해 現 법인 겸업제한 규정\* 완화 (토지분양, 금융알선 추가, 중개사법 개정) \*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법인은 '중개+6개업무'로 겸업범위 한정(<sup>①</sup>임대관리 대행 <sup>②</sup>부동산 이용·개발·거래상담 ③경영정보 제공 ④분양대행 ⑤주거이전 지원(도배 등) ⑥경매 대리) ○ **우수**한 품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**사업자 육성**을 위해 현행 우수 부동산사업자 인증제\*를 전면 개편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 검토 \* `18년부터 부동산 연계 서비스 제공 우수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·운영중 □ (데이터 개방) 신산업 지원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\*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공신력 있는 통계발표 \* 공동주택의 '동' 정보, '등기일'(아파트→연립·다세대 추가), 상가·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'지번', 거래주체 구분(개인/법인/공공기관/기타, 외국 포함) 정보 등 ○ 빈집 거래에 필요한 정보도 민간에 적극 공개\*하여 빈집 정비· 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\* (기존) 빈집수 및 발생원인 → (개선) 위치, 등급, 주택유형, 용도지역 등 추가 공개 Ⅴ. 향후 추진계획 □ 「2024년 주거종합계획」에 따른 제도개선·후속조치 차질 없이 이행 □「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」수립 완료(상반기)